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"수익자"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. 2. "판매회사"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. 3. "영업일"이라 함은 <u>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.</u> 4. ~ 9. 생략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"수익자"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. 2. "판매회사"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. 3. "영업일"이라 함은 <u>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</u> 4. ~ 9. 생략
제23조 (판매가격)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<u>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영업일(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</u>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<u>기준가격으로 한다.</u> ② 생략	제23조 (판매가격)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<u>기준가격으로 한다.</u>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<u>기준가격으로 한다.</u> ② 생략
25조 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13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제 14 영업일)에 공고되는 <u>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(토요일은 제외한다)에는 제2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</u> ②~③ 생략	25조 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13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제 14 영업일)에 공고되는 <u>기준가격으로 한다</u> ②~③ 생략
< 신 설 >	<u>부 칙(개정 2025. 08. 27.)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</u>